

학생생활규정

2020. 09. 21.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1.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하'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의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물론 「교육기본법」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32조(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등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원칙)

- ① 이 규정은 모든 학교생활에서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차별의 원칙, 최선의 이익 원칙,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참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 ② 학생인권에 대한 제한은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학생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규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성의 원칙에 기반을 두어 마련되어야 한다.

제5조(학교 구성원의 책무)

-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법인' 등 포함)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학생생활교육

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학생들은 학교에 마련된 절차에 따라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 받을 권리와 휴식 장소,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행위 포함)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보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제8조(교육활동에서의 학생 책무)

-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첨부1] 교내 생활수칙 및 음악 생활수칙은 첨부1의 표와 같다.

제9조(휴식시간)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사에 반하여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제10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관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스스로 결정하되, 제8조2항의 범위에 따른다.
- ② 용모에 있어서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 ③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품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④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하여 두발 및 복장 등 용모에 대해 규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생이 참여한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절차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첨부2] 학생 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은 첨부2의 표와 같다.

제1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 ①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성냥,ライター,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장난감 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들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 6.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 ② 제10조제1항의 물품을 찾기 위해 학생의 동의를 없거나 불특정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 검사 또는 압수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어 불가피하게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12조(정보통신 윤리)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 ③ 영리를 취할 목적이거나 사이버 도박, 상거래 등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④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이 참여하여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교육활동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다.
- ③ 고사기간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규정에 따른다.
- ④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단, 수업 중 수업 과정 중 필요하여 수업담당교사가 허락할 시에는 사용 후 반납한다.
- ⑤ 위의 물품들을 소지 및 사용 중 분실된 경우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14조(안전)

- ①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에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 ② 학교의 장이 학생의 안전대책 등을 수립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에 제시된 매뉴얼에 따라 행동한다.

제15조(학습권 보호)

-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 및 환경에 맞게 합당한 학습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임신, 출산, 이성교제'를 이유로 퇴학, 전학 등 학습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징계를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교육부 2013년 6월 지침, '국가인권위원회'권고]

제3장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16조(생활교육위원회¹⁾의 구성)

- ① 학생의 생활교육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생활교육위원회는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음악부장, 각 학년부장 등 5명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시킬 수 있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는 교무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선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생활교육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⑤ 생활교육소위원회²⁾는 생활교육 담당교사가 위원장이 되고, 교무차장, 음악차장, 각 학년부장 등을 위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 ①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무부장이 소집하여 심의·의결한다.
- ② 생활교육소위원회는 '학교 내의 봉사'이하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교사의 제청으로 생활교육 담당부장(또는 학년부장)이 소집하여 심의, 의결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이상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한다.
- ③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의 심의 없이 징계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18조(의결 정족수)

생활교육위원회 및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기회의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정당한 규정과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 및 교직원들은 징계 대상 학생을 식별할 수 있는 표현이나 방법을 사용하여 징계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징계 원칙)

학생의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모든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한다.
2. 학생 징계는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의해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때에

²⁾ 생활교육소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기존의 「소선도위원회」의 성격을 가진다.

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언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해야 하며, 반드시 징계 사유, 징계 기준, 징계 재심 청구 절차 등을 서면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안내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6.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미혼모 등 소수자 학생이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진술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 절차(신체적, 언어적 측면 모두 포함) 및 학생의 개인정보(폭력피해경험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학생의 인격권과 학습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7.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으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학교생활교육 담당 부서의 지도를 받아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봉사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실시할 수 있다. '학교 내의 봉사'는 1회 최대 15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징계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봉사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사회봉사'는 1회 최대 10일 이내(또는 최대 40시간 이내) 기간으로 하되 반드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출석으로 처리하며, 창의적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특별교육이수³⁾'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거나, 소속 학교에서 운영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학교나 지정된 위탁 기관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처리한다. 이수 시간 및 기간은 기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4. '출석정지⁴⁾'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보호자의 책임 하에 프로그램을 운

3)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④항]

4) '출석정지'란 대상 학생이 수업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며, 등교 정지와는 구분되며,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상 필요한 경우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4항 인용) 특별교육⁵⁾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⁶⁾'은 학교의 장이 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단, 의무교육 과정은 제외한다. '퇴학처분'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상참작 및 가중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장은 선도처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학생 생활지도부장의 책임지도로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선도처분조치에 응하지 않는 자는 선도 처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교내봉사 이상의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이 당해 학년도에 다시 선도처분 사유가 다시 발생할 경우 가중 선도처분 할 수 있다.
4. 선도처분 중 미인정지각, 결석, 조퇴 등으로 출결상태가 불량할 때는 재징계 또는 상위단계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질병 등 인정할 만한 사유로 인한 결석에 대하여는 부족한 시간을 추가 이수한다.
5. 선도내용 통보 : 선도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처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6. 선도해제 : 생활교육소위원회에서는 선도처분 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처분을 해제할 수 있다.

[첨부3] 징계의 기준은 첨부3의 표와 같다.

제22조(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사무 담당 교사(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단, 의견서로 대신할 수 있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5) '8)'과 동일

6)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⑤항]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3조(심의 확정, 징계통보 및 학교장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고, 보호자와 상담을 통해 학생생활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징계에 대한 재심 요구)

- ① 제21조1~4의 징계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생활교육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는 재심의 결정까지 그 효력을 중지한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 3.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
 -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③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1]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 ④ 재심은 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재적 위원 2/3 이상 참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 ①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붙임2]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26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 또는 재차 징계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관찰·지도한다.

②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대안교육, 재입학 및 편입학, 검정고시,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해야 한다.

제28조(징계의 기준)

① 학생에 대한 징계 양정은 사안의 경중과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

② 학생 사안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정한다.

③ 생활평점제를 운영할 경우 별점은 교육적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학생 징계는 구체적 행위에 대한 생활교육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2.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성을 길러 자유롭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생활을 체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7조(자치활동) 및 시행령 제9조 제8호(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회, 학생동아리 및 그 밖에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자치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 ② 학생회 담당교사는 학생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2 장 학생자치활동

7) 학생 자치활동의 근거

- 가. 교육기본법 제5조 ②항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8.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마.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 제20조(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 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자치활동 지원 조례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적인 교육 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명칭)

본회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칭한다.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인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7조(활동)

본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문 또는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8조(권리 및 의무)

본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9조(승인)

본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0조(학생자치기구)

- ① 본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대의원회, 학생회, 학급회 등으로 구성된 학생자치기구를 둔다(각 자치회 기구 구성·운영은 본 예시안의 제3장(대의원회), 제4장(학생회), 제5장(학급회)에 따르며, 필요에 따라 동아리연합회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제한 금지)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성적, 징계기록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기구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② 징계 기록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기록(적용 기간, 징계 수준)을 학교 내의 공식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결정하여 선거권자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전교 학생임원단 및 학급임원단 선거에만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기간 : 기준일(입후보 등록일) 이전의 1년 이내의 징계기록
 2. 징계수준 : 적용 기간 중에 처분 받은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

제12조(예산편성)

- ① 학생자치회의 경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 ② 학생자치회에서는 다음 년도 예산안 편성단계 이전에 학생자치회 예산안을 대의원 회를 통해 확정하여 본 예산안에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결산)

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담 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회칙 개정)

학생자치회 회칙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학생자치활동 규정의 개정은 대의원 1/3이상의 요구 또는 동의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 또는 동의로 발의하고 학생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대의원회에 회부한 다.
- 2.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 정한다.

제15조(학생자치회 의결사항)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필요에 따라 학교장 또는 학생자문 위원회의 자문과 지도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생 공동의 관심사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하 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7조(정책결정 참여)

- ①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는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여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 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관하여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학교예산으로 충당하며, 본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 3 장 대의원회

제19조(용어)

대의원회란 모든 학급 대표가 참여하는 '학생의회'로서 학생 관련 정책이나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0조(구성)

대의원회는 학생회, 각 학급의 반장, 부반장, 선교부장, 각 학과 과대표와 부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제21조(의장)

- ①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대의원회 의장은 대의원회의 운영을 맡으며, 대의원을 대표한다.

제22조(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23조(회의 및 소집)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학생위원 1/2 이상 및 학생회장, 학교위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4조(업무 및 권한)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학생회 운영 계획 및 운영 개정안에 대한 심의
2. 학생자치활동 관련 예산(안) 심의
3. 학생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대의원회 및 학급회에서 건의한 사항 심의
5. 학생회 회칙 및 임원선출규정의 개정에 관한 심의 · 의결
6.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개선 심의
7.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학생회(안) 발의 및 심의
8. 학생회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 불신임 결의

9.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자(재투표 결과) 및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학생회장·부회장 대표 선출
10.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25조(의결)

- ①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회기 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 ③ 학생회 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위원회에 전달한다.
- ④ 학생회장과 부회장,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한다.
- 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하며, 교직원 및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대의원회의는 정·부회장, 각 부장 및 차장이 학생회 운영 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으며,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의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자격상실)

- ① 본회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3. 기타 사유로 학생회 임원, 학급의 반장, 부반장, 동아리연합회 등 대표의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
- ② 징계기록 공개와 관련한 적용 기간 및 징계 수준은 학교 상황에 따른다.

제 4 장 학생회

제1절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

제27조(용어)

- ① 학생회란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학급 반장, 각 학과 과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식적인 학생 조직을 말한다.

② 학생회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된 조직으로써 학교교육활동과 학교 내 의사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과 리더십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학생회장의 임무)

① 회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학생회 업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회 및 학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
3. 학생회의 각 부장과 차장을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4. 학생 주도의 학교행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한다.
5. 자치활동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자율권을 갖는다.
6. 학생인권과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및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제29조(선출)

① 정·부회장은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생회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출 자격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학생회 구성원의 자격은 징계나 성적 등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을 둘 수 없다.

② 각 부서의 부·차장은 공개모집 등을 통한 회장의 추천에 의해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부서 단위의 업무 추진을 위해 각 부별로 2~3인 이내의 차장을 둘 수 있다.

③ 각 부의 부장은 해당부서의 직무를 기획·관장한다.

제30조(임기)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의 임기는 6개월 또는 1년으로 한다.

제31조(자격상실)

① 정·부회장 및 각부 부·차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제59조 (보궐선거) 참조

1. 대의원회의 불신임 의결에 따른 학교장 승인
2.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 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제2절 학생회 활동

제32조(구성)

학생회는 학생회장과 부회장, 각 학급 반장, 각 학과 과대표로 구성한다.

제33조(업무 및 권한)

①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 운영 계획안 수립
2.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학생자치활동 예산의 편성 및 집행
4.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 추진
5.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위한 학생의견 수렴 및 제안
6. 학생옴부즈맨제도 운영
7. 학생회 담당 교사 추천
8. 그밖에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9. 긴급한 사항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생자문위원회 승인을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제34조(회의 및 소집)

- ① 학생회는 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은 학생회 개최에 앞서 필요시 학생자문위원회에 학교생활에 관련된 제반 도움자료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부서)

- ①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각 호와 같다.
- ② 각 부서의 구성 및 명칭은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직하며, 학생회장단이 당선 후 7일 이내에 제출하고 학교장의 결재 이후 구성한다.

[학생회 부서 예시]

1. 총무부: 사업 계획, 예산, 회계 및 기타 필요한 사무
2. 문화부: 예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습부: 학습활동 및 학습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4. 체육부: 회원의 심신 단련 및 체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생활자치부: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캠페인 및 홍보 활동
6. 옴부즈맨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생활규정 개정 요구, 불편·불만 사항 모니터 및 해결방안 활동
7. 정보 관리부: 네티켓 및 인터넷 클린운동에 관한 사항
8. 진로·진학부: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

제 5 장 학급회

제36조(자격)

학급회 임원의 자격은 각 학급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37조(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장 1인, 부반장 1인, 선교부장 1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8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반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학급회 의장이 된다.
2. 학급부반장은 반장을 보좌하며 반장 유고 시에는 반장을 대리한다.
3. 선교부장은 담임교사를 도와 학급의 아침큐티를 진행한다.
4. 각 학급 임원은 제33조에서 규정한 학생회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9조(협의 및 의결)

-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의결한다.
- ② 학급회의 협의 및 의결 사항은 담임교사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담임 및 부담임 교사는 학급회의 자문위원이 된다.

제40조(회의)

학급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 ① 정기회의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하여 실시한다.
- ② 임시회의는 학급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 및 학급반장, 학급 담임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학급반장의 발의로 소집한다.

제41조(자격상실)

① 학급반장, 부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1. 생활교육위원회 및 교권보호위원회가 요구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요구한 가해학생조치(4~9호)가 확정되었을 때
- ② 학급 반·부반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징계 받은 날로부터 그 임명을 취소하며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 ③ 학급 반·부반장이 전학을 간 경우에도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보선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학생자치회 선거 관리 규정

제42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전교 학생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적용)

①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회장단(이하 '회장단')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2명

② 회장단의 구성 및 선출 방식은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학급반장의 선출 방식 및 일반적인 절차는 회장단 선출 규정에 준한다. 다만, 선출 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출 순서는 후보자 소견발표를 한 후 학급반장, 학급부반장 순으로 한다.
2. 투표 방식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3.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인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4. 선출된 회장단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선관위"라 함)는 현 학생회장 및 학생회의 추천에 의해 6명 이상(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4명 이상)을 선임하여 구성한다.(단, 위원은 동일 학급에서 2명 이상을 선임할 수 없다)

③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학생회 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교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표자 명부 작성에 관한 일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3. 선거운동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일
4. 후보자의 공약 점검에 관한 일
5.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6.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7. 선거에 관한 이의 사항의 심사·처분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⑤ 학교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필수 반영한 '우리학교 선거협약'을 사전에 확정·홍보하여 공정선거를 위해 노력한다.

1. 합동토론회 횟수 및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

2. 선거비용 지원액 및 선거활동 규모 결정

3. 입후보자 간 공정선거를 위한 서약 및 협약

4.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공정선거감시단 운영 등

⑥ 학교선관위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⑦ 위원의 임기는 선거공고일로부터 당선자가 확정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45조(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교직원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되 늦어도 선거일 14일전까지 공고한다.

제46조(선거권자)

선거권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있다.

제47조(입후보 자격)

① 회장 후보 3학년 진급 예정자, 부회장 후보는 2학년 진급 예정자이어야 한다.

②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하며, 학생자치활동 규정 제3조에 따른다.

제48조(투표자 명부의 작성)

학교선관위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부를 작성한다.

제49조(입후보 등록)

①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은 등록 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입후보 등록을 위한 서류들은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다.

<임원 선거 입후보 등록 서류 예시>

1. 후보자등록신청서 1통

2. 추천서 1통

3. 공정 선거를 위한 후보자 서약서 1통

②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

자 등록 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임원선거 입후보 등록 시 고지(학생 공약, 징계 여부 등) 항목은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고지 거부에 대한 사실을 유권자 학생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선관위에 본인이 임원선거 후보사퇴서로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학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후보자는 선거권이 있는 재학생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을 둘 수 있다.

③ 후보자는 제2항의 선거운동을 두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교선관위는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재발 시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또는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2.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3. 우리학교 선거협약에서 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⑤ 후보자는 선거 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단, 선거 운동이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⑥ 후보자의 학부모가 제4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이 한 행위로 본다.

⑦ 학교선관위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 또는 등록을 무효로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준다.

제52조(예산지원)

학교에서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물품구입을 위한 선거 운동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벽보)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사진, 자기소개와 공약사항 등을 기재한 벽보를 출력물 형태 또는 파일 형태 등으로 후보자 등록 마감일 2일 후까지 학교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벽보의 규격, 출력물 형태, 파일의 종류 등은 학교 사정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단,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54조(소견 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소견 발표회(토론회)와 개인소견 발표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이상의 합동소견 발표회(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 기호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③ 학교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우리학교 선거협약'에 따라 SNS 및 유사한 방법을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 여부를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제55조(투표)

①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전까지 투표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투표용지는 학교선관위가 작성하되, 그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④ 투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⑤ 후보자는 투표소마다 투표 참관인을 1인씩 선정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은 투표 진행 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학교선관위 위원은 선거인이 제시한 학생증과 투표자 명부를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1매씩 교부한다(단,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 또는 담임교사가 확인 증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⑦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56조(개표)

① 학교선관위는 선거 2일전까지 개표 장소를 결정하고, 투표가 끝나기 30분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학교선관위 위원이 담당한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야 하며, 개표 참관인은 개표 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학교선관위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디에도 정해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두 후보자 이상에 기표를 한 것
4. 어디에 기표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정해진 기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를 한 것

-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에 2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 상에 정해진 기표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정해진 기표한 것이 (동일 투표지에) 복사 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 ⑥ 학교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한다. 이때 개표 결과는 득표수를 제외하고 순위를 공개한다.

제57조(당선)

- ①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득표 후보자들을 당선으로 한다.
- ② 후보자 등록결과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③ 제1항의 개표결과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같을 때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최다득표자들만을 후보로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④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교장에게 제출하고,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재선거)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부정선거 등 선거 취소에 합당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직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선거 전부를 무효로 결정한 때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일 이전에 당해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 된 때
 4. 최다득표자가 둘 이상일 때(단, 재선거시 최다득표자만 입후보 자격을 갖는다.)
- ②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거 절차는 당초 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9조(보궐선거)

- ① 회장단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에게 보궐선거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제31조에 의거 회장단이 징계를 받아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①항의 보궐선거 요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 ③ 회장단의 임기 종료일까지 선거 일정이 확보되지 않거나 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① 선거와 당선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내에 학교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학교선거관리위원회는 제①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내에 심의·결정 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당선무효, 임명 취소)

- 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선인이 50조 ④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 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 ② 임원의 임기 중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즉시 임원의 임명이 취소된다.

제62조(보칙)

- ① 선거 담당 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 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학교선관위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② 학교선관위 위원장은 투표지를 포장하여 선거 담당 교사에게 제출하고 담당 교사는 이를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투표일 경우에도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 ③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직원회 또는 학교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자치회 및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학생생활규정 제·개정⁸⁾

제1조(제·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위원의 수가 반드시 재적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학생자치조직의 요구가 있거나 학교규정의 제·개정안에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2조, 제13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내 공청회 및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절차에서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는 방향으로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제2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으며, 발의에 대한 기준은 학교 상황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1/3 이상의 동의
 2. 학생 또는 학생 대의원 1/3 이상의 동의
 3. 학부모회 위원 1/3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시기(학기말 또는 학년말 등)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8) 가.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나. 출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교육부, 2014)

제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사 반영 비율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 위원회에서 정하되 가급적 학생의 의견을 50%이상 반영하도록 한다.

제4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자문을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 규정 제·개정 심의 시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⁹⁾

제5조(교육 및 연수)

학교의 장은 제·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며, 학부모에게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제·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에 필요한 준거를 마련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자치회 및 학생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9) 초·중등교육법 제59조의4(의견수렴 등)

[첨부1] 교내 생활수칙 및 음악생활 수칙

※ 교내 생활수칙 ※

1. 교실이나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2. 쉬는 시간 등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학교 외부로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3. 위험한 놀이는 자제합니다.
4. 계단 통행 시에는 서로 양보합니다.
5. 계단에서는 여러 계단을 한꺼번에 뛰거나, 난간에서 장난하지 맙시다.
6. 창가에서 장난치지 말고 창틀에 걸터앉거나 매달리지 맙시다.
7. 교실 문이나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 장난을 삼갑시다.
8. 교탁, 출입문, 연습실 벽, 기둥 등을 발로 차지 맙시다.
9.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준비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운동 중에 심한 두통, 어지럼증, 가슴 결림, 호흡곤란이 있으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교무실로 방문합니다.
10. 교내에 공사 또는 수리 중인 시설이나 위험한 곳은 출입을 삼갑시다.

※ 교내 음악생활 수칙 ※

1. 수업시간 전에 교실을 정리하고 악기를 세팅합니다.
2. 개인악기, 케이블, 건반 페달은 개인이 준비합니다.
3. 악기, 책걸상 등 교실 내 기물은 허가 없이 이동 및 반출을 금지하며 관리부 선생님 허락 하에 이동합니다.
4. 악기, 음향장비 파손에 주의합니다.
5. 합주실 및 연습실 사용주의 사항을 따릅니다.
6. 연습실 출입 시 학생증을 항상 소지합니다.
7. 지정된 장소에서 연습을 하며, 악기와 장비, 연습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8. 소지품에 개인 이름과 반 번호를 기입하여 분실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9. 빈 공간에 남겨진 개인 소지품의 분실에 대해서는 본인의 책임임을 기억합니다.
10. 개인연습실에 2명 이상의 학생이 들어가는 것을 금하며, 불 경건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11. 연습실 내에 조명을 끄지 않도록 하며 잡담을 하지 맙시다.
12. 생활수칙을 어기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시에는 학생 생활규정에 의하여 징계의 대상이 됩니다.

학생두발 및 용의복장 규정

내용 항목	규정
두발	1. 학생의 자율에 맡긴다.
교복	1. 교복을 구입하였을 때 상태 그대로 변형하여 입지 않는다. 2. 교복을 착용하는데 있어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고 학생 본인이 자율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복을 착용토록 한다. 3. 매주 월, 금요일 등교시에서 종례시까지 교복을 착용하며 이외에는 학교 생활복 및 사복을 허용한다.
신발	1.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등교 시부터 종례 시까지 학생용 운동화 착용한다. (조리, 슬리퍼, 하이힐 등은 착용금지) 단, 우천 시나 개인 질병에 관련하여 예외로 둔다.
학생증	1. 연습실 사용 확인 및 신분 증명을 위하여 학생증을 항상 소지한다.
기타	1. 피어싱 착용을 금하며 문신은 절대 금한다. 2. 담배, 라이터 등 청소년 및 학생에게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학생생활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된다. 3. 문신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4. 과도한 화장은 하지 않는다. 5. 위의 사항 이외에도 학교장은 학교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저해되는 사항을 규제 할 수 있다.

[첨부3] 징계기준

징계기준

구분	항	행 위 내 용	징 계 내 용					
			훈계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예절 · 교권 침해	1	언행이 불량하여 외부인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학생	○	○	○			
	2	교사(학부모 교사, 특강 강사 등)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언행을 한 학생	○	○	○	○	○	○
	3	교권을 침해한 학생, 교사에게 불손한 반항을 하거나 폭력을 가한 학생	○	○	○	○	○	○
	4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5	학교의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근태	6	타인을 선동하여 교권 훼손을 주도한 학생 및 가담한 학생	○	○	○	○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한 학생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 3회는 무단결석 1회로 간주)	○	○	○	○	○	○
	8	무단가출한 학생	○	○	○			
관 범	9	용의 및 복장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	○	○	○	
	10	상습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학생	○	○	○	○	○	○
	11	공공 문서 및 인장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대여한 학생	○	○	○	○	○	○
	12	상습적으로 교문이외의 방법으로 학교 출입을 한 학생	○	○	○			
	13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행사에 출연 또는 참가한 학생	○	○	○			
	14	학교 게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	○	○			
	1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16	타인을 희롱하거나 심한 욕설을 한 학생	○	○	○	○		
	17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했거나 이에 가입한 학생	○	○	○	○	○	
	18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동조한 학생	○	○	○	○	○	
	19	학교장의 허가 없이 행사를 주관하거나 동참한 학생	○	○	○	○	○	
	20	타인의 물품 혹은 금품을 절취(절도)한 학생	○	○	○	○	○	○
	21	학교장의 허가 없이 타인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징수한 학생	○	○	○	○	○	○
	22	불량 동아리를 조직, 운영하였거나 활동한 학생	○	○	○	○	○	○
	23	도박 등 사행성 행위를 한 학생	○		○	○	○	○
	24	불온 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	○	○	
	정 보 통 신	25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
26		사법기관에 구속·석방된 학생	○		○	○	○	○
27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
28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 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29		불량 동아리 카페를 조직, 운영 또는 건전하지 못한 활동으로 학교 명예를 크게 실추한 학생	○		○	○	○	○
30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소지, 사용, 배포, 매매한 학생	○	○	○	○		
31		온라인 상에서 허가 없이 학교 명의를 도용한 경우	○	○	○	○	○	○
수 업	32	온라인 상에서 학생 또는 교사의 인권을 침해 한 경우	○	○	○	○	○	○
	33	교사의 교육권을 방해하거나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34	정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	○	○
	35	학교단위 활동이나 학교단위 활동에 무단 불참한 학생	○	○	○	○		
	36	수업 또는 교육활동 중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					
	37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 동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또는 시험과 관련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	○	○
연 습 실 및 합 주 실 사 용	38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참여한 학생	○	○	○	○	○	○
	39	악기, 책걸상 등 교실 내 기물을 허가 없이 이동·반출한 학생	○	○	○			
	40	악기 장비를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	○	○			
	41	악기 및 음향장비를 고의로 훼손·파손한 학생	○	○	○			
	42	연습실 및 합주실 사용 주의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생	○	○	○			
기 타	43	연습실 및 합주실 관리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불손한 반항을 한 학생	○	○	○	○	○	○
	44	이외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약 물 및 흡 연 음 주	45	청소년 유해 약물을 소지 또는 사용, 유통한 학생	○	○	○	○	○	○
	46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1회 시 교내봉사, 사회봉사(5일 이내), 2회 시 사회봉사, 특별교육(5일 이내), 3회 시 징계위원회 회부 및 퇴학처분 흡연시- 3회 이웃 제도 퇴학(전학조치)	○	○	○	○	○	○
안 전	47	휴대 금지 물품(휴기 등)을 소지한 학생	○	○	○	○	○	○
	48	허가 없이 하급생을 집합시킨 학생	○	○	○	○	○	○